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4. 9. 25 조례 제2544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디지털성범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
 - 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 1항제1호에 따른 행위
 - 라. 그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 - 2. "디지털성범죄 피해자"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·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해야 한다.
 - 1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
- 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· 지원에 필요한 시책
- 3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, 정책, 사업 모니터링
- 5.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피해자 보호·지원사업)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피해자 상담 · 의료 · 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
 - 2. 피해자 법률 지원
 - 3.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
 - 4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 - 5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- 제6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.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, 피해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수사·법률기관,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